

청원소개의견서

청원인	주소 :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
	성명 : 이석태(참여연대 공동대표)
건명	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청원
소개년월일	2012. 11. 13.
<p>소개의견</p> <p>참여연대가 2012년 6월에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, 2010년 10대 재벌집단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각각 15.1%와 16.5%를 기록했고, 특히 삼성그룹 제조업 외감기업의 2010년 실효법인세율은 11.7%, 삼성전자의 경우 실효법인세율이 11.9%까지 낮아졌습니다.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최저한세율(14%)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. 당초 투자와 고용창출을 목표로 시행된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정책은 그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</p> <p>따라서 현재 국내 재벌 대기업들에게 각종 세제혜택이 집중되어 이들이 최저한세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효법인세율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법인세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.</p> <p>이에 참여연대가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하여 최저한세율을 15%, 10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 20%로 상향하고자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입법청원안을 본 의원이 소개하는 바입니다.</p>	

소 개 의 원

김현미 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12. 11. 13.

제안자 :

1. 제안이유

세 부담 능력있는 대기업들에게 과도하게 혜택을 주는 조세감면제도의 개선을 통해 조세형평성을 꾀하고자 함. 다만 지원이 필요한 100억원 이하 부분과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그대로 유지함.

2. 개정의 주요내용

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인 법인에 대하여 11%, 1,0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하여 14%로 되어 있는 최저한세율을 각각 15%, 20%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2조(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) ① 내국법인(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)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「법인세법」 제91조 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(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,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정세액은 제외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)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(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과세표준"이라 한다)에 100분의 20[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5,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, 중소기업 및 제85조의6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(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

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,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)]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(이하 "법인세 최저한세액"이라 한다)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2조(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) ① 내국법인(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)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「법인세법」 제91조 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(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,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정세액은 제외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)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</p>	<p>제132조(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) ① 내국법인(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)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「법인세법」 제91조 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(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,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정세액은 제외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)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</p>

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(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과세표준"이라 한다)에 100분의 14[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,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, 중소기업 및 제85조의6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(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,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)]를 곱하여 계산

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(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과세표준"이라 한다)에 100분의 20[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5,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, 중소기업 및 제85조의6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(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,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)]를 곱하여 계산한

한 세액(이하 "법인세 최저한세액"이라 한다)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.

세액(이하 "법인세 최저한세액"이라 한다)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.

【별첨 1】

청원인 서명날인부

연 번	성 명	주 소	날 인	비 고
1	이석태	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		

【별첨 2】

소개의원 서명날인부

연 번	의 원 명	날 인	소 속 정 당	소속위원회	선 거 구	비 고
1	김현미		민주통합당	기획재정위원회	경기고양시일산서구	